

- 2020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
[법무]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0년 하반기 경상북도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I . 시험개요

1. 관련근거

- 가. 「소방공무원법」 제7조(신규채용), 제11조(시험실시기관)
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34조(시험실시권)
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2. 채용예정인원 : 1명

채용기관	채용분야	직급	인원	비고
경상북도 (소방본부)	법무	소방경	1명	양성

3. 시험절차 및 방법

- 가. 시험절차(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법무분야 채용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인·적성검사 포함) → 면접시험

나. 채용일정

○ 법무

시험명	시 험 일 정			
	구 분	일정공고	시험일(시행일)	합격자 발표
'20년 경상북도 하반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법무)	'20.12.1.(화)~12.8.(화) (8일간/접수기간) '20.12.1.(화)~12.10.(목) (10일간/취소기간)	• 원서접수 : 인터넷(http://local.gosi.go.kr) • 응시관련 서류제출 : 인.적성검사 시 제출 ※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		
	신체검사	12.11.(금)	12.15.(화)~12.16.(수)	12.21.(월)
	서류전형		12.17.(목)	
	인 · 적성검사			
	면접시험	12.21.(월)	12.23.(수)	'20.12.31.(목)

※ 세부 및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공고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① 중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중전의 재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법인 등 세부내용은 법률 참조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
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나. 응시자격

분 야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법 무	○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수료)에 합격하거나,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다. 응시연령

구 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 채용시험	소방경	법무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1997. 12. 31.
<응시상한 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라.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 중 맨눈 시력이 각각 0.30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0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함

마. 거주지 : 제한 없음

II. 원서접수

1.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20. 12. 1.(화) ~ 12. 8.(화) / 8일간

나.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응시원서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24시간(단,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다. 사진등록

○ 반명함 증명사진, 사진파일(JPG, GIF,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동물·식물·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라. 응시수수료 : 7,000원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추가비용 발생)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재(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포기로 처리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 시 납부 응시료 환불

마. 가점적용 : 해당없음

Ⅲ.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1. 신체검사

가. 일 자 : 2020. 12. 15.(화) ~ 12. 16.(수)

나. 장 소 : 별도 공고

다. 내 용

-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합니다.
- 신체검사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합니다.

2. 서류제출

가. 제출일자 : 2020. 12. 17.(목) 적성검사 시 제출

나. 제출장소 : 경북도청 소방행정과 인사채용팀(610호)

※ 주소 : 경북 안동시 도청대로 455, 소방행정과 인사채용팀(610호) ☎ 054-880-6152

다. 제출대상 : 법무분야 응시자

라.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법 무	① 변호사 면허증 사본(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기준(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③ 군복무확인서 1부 ☞ 전역예정 및 소집해제 일자 명기되어야 함 (군복무 중인 자에 한함) ④ 병적증명서 1부 ⑤ 최종학력증명서 ☞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붙임 6 서식)

Ⅳ.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1. 인·적성검사

가. 검사일자 : 2020. 12. 17.(목)

나. 장 소 : 별도 공고

다. 검사대상 : 법무분야 응시자

라. 검사방법 : 응시자 집합 인·적성 검사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정사인펜 등)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바. 응시자 유의사항

-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회에게 제공되는 자료로써 미 응시할 경우 불합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2. 면접시험

가. 시험일시 : 2020. 12. 23.(수)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

다. 시험대상 : 신체검사 합격자

라. 평가방법 : 1단계 집단면접(블라인드 면접), 2단계 개별면접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바. 합격자 공고 : 최종 합격자 공고와 병행 발표

<면접시험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⁰,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V.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2020. 12. 31.(목)

나. 공고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 게재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gb119.go.kr>) 채용정보 게재

<최종 합격기준>

■ 법무

면접시험성적 **100%**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특이사항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동점자 결정은 총득점 기준)

VI. 응시자 유의사항

1. 공통사항

가.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상북도 및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경상북도) <http://www.gb.go.kr> - 시험정보란
- ▶ (경북소방본부) <http://www.gb119.go.kr> - 채용정보란

나. 시험일정 및 정보는 상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으로,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라. 시험(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신체검사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마.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바.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2. 원서접수

- 가.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 합니다.
 - 나.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부정행위 목적으로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있음
- 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합격자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무효 되거나 취소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소방행정과 인사채용부서(☎ 054-880-615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3.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1부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1부

<붙임1>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4cm)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혈 압				
시력	맨 눈	좌: 우:	색 신	(색 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 부 X 선 검 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 합 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합 격 여 부	[] 불 합		
	[]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붙임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⁰,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 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정행위자가 당해 필기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임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하반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상북도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의무이행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기관	제공근거 및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국세청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 사실 등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대학 등 학위 발급 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 번호, 취득일자, 전공명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자격증 발급 기관	- 임용령 제15조, 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경상북도에서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1월 1일

성명 : (서명 또는 인)